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6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장경태·박홍배·박지원

서영교 • 이건태 • 전현희

김용민 · 강준현 · 박균택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 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 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 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결서등의"를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결서등 의"로 한다.

제1편제6장에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4(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심의) ①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③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복사) 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	
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	
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판결서등의</u>	<u>제</u> 59조의4제 <u>1항</u>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	에 따른 판결서등열람제한 심
다.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결
	<u>서등의</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9조의4(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심의) ① 제

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③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법원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